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회용품 사용 금지 고지를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규정 신설〉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0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2
1. 1회용품 사용 금지 고지를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5월 1일 업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이에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2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1회용품 사용 금지 고지를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규정 신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실내 1회용품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방송,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 또는 구두 등으로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10조제3항 신설), 이를 고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실내 1회용품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방송,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 또는 구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안내 방법으로 고객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 2의3.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의3. (현행과 같음)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실내 1회용품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 16. (생략)	4. ~ 1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에서 그 종류를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봉투·쇼핑백 등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제15호1), 시행령 별표1),

동법 제10조²⁾는 특정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제한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숙박업(50실 이상)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삼푸·린스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 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 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자료 : 환경부

동 조항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동법 제41조 제2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2024년 기준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14건으로 총 1,930만원이 부과되어 평균 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점검 대상	점검 업소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부과 총액	과태료 평균
2022년	1,634,300	139,546	1,340	13	1,920,000원	150,000원 (최대 50만원, 최소 2만원)
2023년	1,671,857	190,232	22,884	110	21,480,000원	200,000원 (최대 50만원, 최소 2만원)
2024년	1,726,226	149,803	2,514	114	19,300,000원	170,000원 (최대 50만원, 최소 2만원)

* (출처) 지자체 제출 자료

** '22.11월 개정된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3년 특별 점검 실시

자료 : 환경부

그러나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가 있음.

참고로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2호)」을 개정(2025.2.7.)하여,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된 1회용품을 고객이 변심하여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지침은 “매장 외 사용 조건”에 한정된 예외로, 개정안과 같은 “고지”를 근거로 한 면책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면책 규정을 법률로써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다만,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①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 부담을 야기할 수 있고, ② 고지 이행 여부에 대한 증빙이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③ 한편으로는 실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일회용품 감축이라는 제도적 목표 간 정책적 균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546